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699
----------	------

제출년월일 : 2008. 6.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4. 7. 22.)는 안산시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복지 및 안산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위원회 구성 후 심의가 전무하여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현재 운영중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폐지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문)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문화관광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담당·팀장 직위·성명	관광담당 전성배
	담당자 성명·전화	김유미 (행정 3059)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4.07.22 조례제11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복지 및 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 이라 함은 예술성·여가성·대중성 및 오락성 등의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고 즐기는 것을 말한다.
2. "문화관광 콘텐츠" 라 함은 문화관광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①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문화관광 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3인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2명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부시장,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민은 3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원
2. 문화예술·관광 및 학계
3. 공공기관
4. 언론, 종교 및 경제계
5. 시민·사회단체
6. 기타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주민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관광 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 ②회의는 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이 지명하는 공동 위원장이 주재 할 수 있다.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